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 · 적법세금 · 성공경영 정보



안사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2023/ 2/ 1 통권 1608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CEO 에세이 - 이해익원장

CEO는 선도적 경영을 추구한다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종 회계사 : 2023년도의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2022년 재무제표)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10만원 이하 비과세 식대와 사용자부담 4대보험료 등은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
- 2023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 '23년 외부감사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을 꼭 확인 하세요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남편에게서 상속받은 조합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입주하면서 재건축기간동안 거주하기 위해 아내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에도 1세대 1주택은 적용함 (p.13)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청년창업자의 법인설립과개인사업자의 핵심차이 비교>

개념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설립, 시작	사업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함	1. 법인설립 등기 → 2. 사업자등록
사업책임	무한책임, 외부채무와 납세책임 무한	유한책임(자본금 범위내 외부채무), 지분 50% 초과된 과점주주는 세금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
소득과 세금	소득원천설 열거주의 종합소득세(근로, 사업, 이자, 배당 등 합산)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은 별도신고	순자산증가설 포괄주의 법인의 총소득에 법인세
대표자 급여	사업소득 이익 전채가 대표자 급여임	대표이사 급여는 법인비용으로 반영(22% 절세효과)
이중과세 문제	다단계누진세율 종합소득세 신고로 완결	법인세 과세(22%) + 주주배당소득 종합과세 - 세액공제 11%(법인+개인 이중과세의 50% 해소)
과세이연	매 1년단위 이익(종합소득)에 당년 전액과세(이연 안됨)	중소법인이익에 10%~20% 과세후, 주주 배당시기까지 여러 연도에 걸쳐 과세이연됨
기장, 통장 등	복식부기 원칙, 매출적으면 간편장부 가능, 대표자 전액출금	· 법인통장거래에 기반한 복식부기 엄격 적용 · 경영자 급여 이외 대표자 출금시 가지급, 잉여금 배당으로 처리
공시, 감사 등	해당안됨(외부공시 안됨)	자산 120억원 이상은 외부감사, 전자공시

(안사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사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사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608호 / 주간 5호

2023. 02. 01. (수)

· 발행인: 이윤선
· 제작: (주)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02) 829-7575
FAX: (02) 718-8565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 - 7575
팩스: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 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청년창업자의 법인설립과 개인사업자의 핵심 차이	표지
긴급시사해설	2023년도의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2022년 재무제표)	2
CEO에세이	CEO는 선도적 경영을 추구한다	3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 인근 마을 식대 - 교직원 진로비 감면 과세 관련 - 시에서 관리하는 땅에 보수작업을 할 경우 계정처리 - 주상절리 석재 구입	5 6
눈에 맞는 절세미인	10만원 이하 비과세 식대와 사용자부담 4대보험료 등은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7
매일 절세재무요점	- 다주택자·법인 취득세율 증가 현황 - 부동산 서제 보완 방안 주요내용	9 10
직장인 Survival	후회 없는 삶을 위한 10가지 제안	11
최신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공동사업에 제공하는 토지가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 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 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법규법안-1862, 2022.04.0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같은 항 4호 각 규 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 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질의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자본거래-1752, 2022.05.23)	12 13
세정뉴스와 해설	지분 20% 이상 상정사에 기업상속공제 적용	14
마케팅 Tax consulting	남편에게서 상속받은 조합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입주하면서 재건축기간동안 거주하기 위해 아내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에도 1세대 1주택은 적용함	13
세무정보	-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 - 2023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 일시적 2주택자의 중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15 33 40
회계정보	- '23년 외부감사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41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를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 준·재정환율	3

2023년도의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 (2022년 재무제표)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자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 · 증여 · 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 양수 컨설팅
(829-7575)

- 수익인식 : 수익인식 모형에 따라 수익인식해야 함(제조 · 건설업 제외)
 - ① 계약식별 : 고객과 실질계약인지 판단(권리, 의무, 조건, 대가회수가능성)
 - ② 수행의무 : 고객에게 권리이전 약속 등 의무식별(서비스 주고 대가 받는 것)
 - ③ 가격산정 : 고객에게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가산정(변동가, 금융요소 반영)
 - ④ 가격배분 : 거래가격과 수행의무(원가)의 합리적 대응 배분
 - ⑤ 수익인식 : 수행의무 이행이나 기간경과에 따른 수익인식
- 현금성 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 횡령, 유용 대응
 - ① 현금성자산의 내부통제 실효성 점검과 현금 잔액의 실재성 검증
 - ② 사업특성별 현금흐름정보를 영업, 투자, 재무활동별로 구분표시
- 상각 후 원가측정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 충실계상
 - ① 매출채권 회전을 변동상황, 손실충당금 설정을 차이로 문제회사 선정
 - ② 사업연도말 신용위험의 유의적증가여부 판단 : 기대신용손실반영
 - ③ 손실인식위한 투입 변수, 가정근거, 손실충당금 변동원인과 내역 주석공시 등
- 사업결합 : 다양한 인수, 합병, 영업양수도 등의 증가
 - ① 취득자산, 인수부채를 취득법 적용하여 공정가치인식(투입물, 과정 중시)
 - ② 사업결합 내용(자산, 부채, 지분, 지배력유무 등)과 재무영향평가 → 자산, 부채의 공정가치와 종류별 인수금액을 주석공시 함

CEO는 선도적 경영을 추구한다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타이밍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생명 그 자체다. 미국의 탁월한 마케팅 전문가인 알 리스 (Al Ries)와 잭 트라우트 (Jack Trout)는 그들의 명저 ‘마케팅 불변의 법칙’에서 무엇보다 먼저 선도자의 법칙을 강조했다.

많은 사람들이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더좋은 상품과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잠재 고객에게 확산 시키는 일인줄 알고 있다. 틀린 생각이다. 마케팅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 요소는 최초로 뛰어 들수 있는 영역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선도자의 법칙이다.

반세기전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한 이는 누구인가. 영국의 힐러리경이 아닌가. 그렇다면 두번째는? 그것은 대답하기 쉽지 않다. 그렇다고해서 맨 처음 나온 것이 모두 성공한다는 것은 아니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최초라고 내 놓은 것이 너무 늦을 수도 있다.

이를테면 유에스에이 투데이(USA Today)지는 최초의 전국지였지만 성공치 못했다. TV시대에 전국지를 발행한다는 것은 너무 늦게 시작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도자의 법칙은 어느제품, 어느 브랜드, 어느 영역에나 적용된다.

미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대학의 이름을 모른다고 가정하자. 그 경우 최초라는 자리에 선도적이라는 단어를 대치함으로써 훌륭하게 추측할 수 있다. 바로 하버드 대학이다.

최초의 미니밴은 크라이슬러 (Chrysler)가 소개했다. 오늘날 크라이슬러는 자동차 시장의 10%정도를 점유하고 있지만 미니밴 시장에서는 50%정도를 장악하고 있다.

질레트(Gillette)는 최초로 선보인 안전면도기였다. 스카치 테이프라는 이름대신 셀로판 테이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 별로 없을 것이다.

브랜드 이름을 일반 용어 처럼 쓰는 경우도 흔하다

이 물건을 서부해안으로 급송하라 고 말하는 대신 페덱스 (Fedex, Federal Express Corp)라는 브랜드 이름을 동사처럼 사용한다.

말하자면 선도적 브랜드가 그 제품군을 대표하는 대명사화 했다는 것이다. 진통해열제 시장

에 맨 처음 소개된 브랜드인 타이레놀 (Tylenol)도 그렇다. 최초는 그만큼 절대적이다. 조지 워싱턴은 미국 최초의 대통령이다. 제 2대 대통령은?

삼성그룹 창업자인 호암 이병철회장의 술회라고 전해지는 일화가 있다. 천하의 그가 전심투구했지만 마음대로 달성치 못한 세가지가 있다고 한다. 골프와 자식 농사와 조미료의 대명사인 미원 앞지르기다.

조미료의 선두주자 미원은 막강한 자금력과 조직력을 갖춘 삼성 그룹 미풍의 혹독한 추격과 공격에도 끄떡없었다. 심지어 삼성 그룹의 한 임원조차 야근하다 끓인 라면에 넣어 먹기위해 아랫사람에게 큰소리로 외쳤다. “미원 갖고와!” 미원이 입에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크게 곤욕을 치루었다는 우스개 얘기도 있었다. 그 당시에는 감칠맛나는 미원을 모든 음식에 넣어 먹었다. 그런것에 힘입어 미원은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그룹 명칭이 되었다. 최근에 그룹이름을 대상그룹으로 바꾸어 재 창업을 시도하고 있는듯 하다.

일등주의 삼성그룹은 결국 미풍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새로운 영역인 자연 조미료 다시다를 런칭, 성공하면서 조금쯤은 한을 풀었다고 할 수 있다. 여하튼 그렇게 조미료 시장에서 격돌했던 대상그룹의 후계자 오너와 삼성그룹의 후계자 오너 가족은 사돈으로 엮여졌다. 세월의 흐름이라 아니할 수 없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월 19일 (목)	1월 20일(금)	1월 25일(수)	1월 26일(목)
미	달 러 (USD)	1239.80	1236.00	1234.40	1233.40
일	본 엔 (JPY)	962.99	962.35	948.92	953.21
영	국 파 운 드 (GBP)	1530.53	1531.65	1522.45	1530.28
캐	나 다 달 러 (CAD)	918.64	917.87	922.92	921.27
홍	콩 달 러 (HKD)	158.46	157.84	157.66	157.51
중	국 원 (CNH)	182.74	182.41	182.30	181.94
유	로 화 (EUR)	1338.24	1338.96	1343.77	1346.69
호	주 달 러 (AUD)	860.67	854.26	868.71	876.45
싱	가 폴 달 러 (SGD)	938.92	935.19	935.33	939.45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87.42	286.91	288.04	289.43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Q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1-31-1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의 6. 4자간 무역거래의 을에 해당하는 회사입니다.

해당 거래를 시작하면서 검토 부족으로 을인 당사가 갑에 계산서가 아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왔습니다.

본 사유가 법인세법 제121조 6항, 법인세제과-1279(2019.9.18), 법인세제과-893(2018.7.23)에 해당하므로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귀 법인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A 국내사업자간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거래를 하면 되는데, 계산서가 아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귀사가 제시한 유권해석(법인세제과-893)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과세관청에서 해당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판단할 사항입니다.

인근 마을 식대

Q 인근마을에 음식,상품 등을 사서 명절 선물 등으로 드렸는데, 영수증 발행이 안되기에 기부금이 안될것같은데

거래처가 아닌데 접대비로 처리시 인정되나요? 복리후생비는 안될것같고,

A 업무관련 지출이라면 접대비로 업무연관성이 없으면 기부금(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교직원 진료비 감면 과세 관련

Q 부부가 모두 교직원인 경우, 교직원의 가족으로서 자녀가 받은 진료비 감면이나 학비 감면을 과세할 때 부부가 금액을 나눠서 과세해도 괜찮은가요?

진료비 감면액 중 일부는 부, 일부는 모에게 과세하는게 가능하다면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와는 연관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 부에게 자녀의 인적공제를 넣을 경우, 부/모 에게 해당 자녀의 진료비 감면액을 나눠서 과세해도 되는지,
부에게 몰아서 다 과세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A** 원내 직원의 감면 관련하여 부부 모두가 직원인 경우 자녀의 학비나 진료비 감면액을 부/모 어느 한쪽에서 반영해야 하는지, 나누어야 하는지는 세법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며, 귀원의 내부 방침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땅에 보수작업을 할 경우 계정처리

- Q** 시에서 관리하는 공터에 회사와 시에서 각각 비용을 내어 보수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2천만원일 경우 회사 600백만원, 시 1400만원)
흙으로 된 공터에 바닥 평탄화작업, 잡초등 풀이 안자라도록 매트설치 등의 작업이 있을 예정인데, 여기에 투입되는 회사의 비용은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 A** 귀사 소유의 토지가 아닌 곳에 귀사의 비용을 들여 보수작업을 하는 사유가 질의에는 설명되어 있지 않는데, 귀사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접대성 경비이며 업무무관이라면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상절리 석재 구입

- Q** 당사의 조경용으로 주상절리 석재를 다량 구입했습니다.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부탁 드립니다.
토지에 대한 원가, 건축물, 기타자산, 감가상각은 어떻게 해야할지?
- A** 건축물을 취득한 이후에 별도로 조경용 시설물을 토지위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로 처리하고 감가상각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0만원 이하 비과세 식대와 사용자부담 4대보험료 등은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담실 백종훈 차장

지급명세서는 소득자의 소득금액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 및 제출 등과 같이 사업자로 하여금, 1년간 모든 지급소득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2월 말(근로소득·퇴직소득은 3월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1%의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된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제출대상이 된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는 미제출가산세(0.25%)가 적용된다.

지급명세서는 소득금액 등을 실제 지급하는 자가 제출함

지급명세서는 이자·배당소득 또는 근로소득 등 일정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금액 등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 등의 종류와 금액, 지급시기와 귀속연도 등을 기재한 일종의 과세자료이다.

즉, 근로소득 등 각종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그 내역을 기록한 자료로서,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비자발급을 위한 소득금액증명원, 각종 공적부담금 부과자료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지급명세서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자소득·배당소득·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그리고 원천징수대상 봉사료수입금액 등이 모두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이 된다.

이처럼 각종 소득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금액의 국내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관련 지급명세서를 그 제출 기한내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러한 지급명세서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근로소득·퇴직소득은 3월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 제출은 전산매체가 원칙임

지급명세서 제출은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금융보험업자, 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 법인, 복식부기의무자 등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지급명세서를 정보통신망(HTS)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전산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매체 제출자 중 직전년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10인 이하인 자는 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비과세소득 중 4대보험료 사용자부담금 등은 제출대상에서 제외됨

소액의 강연료 소득이나 10만원 초과되는 복권·경품권 등 그리고 과세최저한을 초과하는 승마투표권 등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비과세소득 중 4대 보험 등의 사용자부담금이나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그리고 일직료나 숙직료 등 일부 실비변상적 급여는 지급명세서제출대상이 아니다.

◇ 소득세법 §12(4)의 비과세근로소득 중 지급명세서제출대상 내용

- ① 근로자가 받는 학교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등
- ②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 ③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수당, 선원이 받는 수당(20만원 이내),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연구보조비, 취재수당, 벽지수당, 천재지변으로 받는 급여
- ④ 정부·공공기관 중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전지원금
- ⑤ 외국정부,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가 받는 급여
- ⑥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 군무원이 받는 급여
- ⑦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 ⑧ 생산직근로자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수당
- ⑨ 10만원 이하 출산 보육수당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월

다주택자 · 법인 취득세율 증가 현황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2주택	1-3	1-3
	3주택	6	4
	4주택 이상	6	4
법인		6	6

화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공제내용

◎ 생계비 부담 완화

대중교통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40% → 80%
신용카드 등 전년대비 증가분 소득공제율	20%

◎ 주거 부담 경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300만원 → 400만원
월세액 세액공제율	10% → 15%

◎ 임신·출산 지원

난임시술 의료비 세액공제율	20% →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15% → 20%

◎ 기부문화 활성화

기부금 세액공제율	15% → 20%
-----------	-----------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 주요내용

◎ 공공주택사업자 등의 세부담 완화

- 중과 누진세율 대신 기본 누진세율 적용
- 최고세율 기존 5.0%에서 2.7%로 인하

◎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의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 완화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비수도권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 · 분양권 등 처분기한 연장

대상	1주택 + 1입주권 · 분양권자, 대체주택 거주자
처분기한	신규주택 완공일 기준 2년 → 3년 이내



2023년 자동차관련 제도 변경사항

정책 및 제도	주요내용	관련 법규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소비세 30% 인하 6개월 연장 - 연장기한: '22. 12. 31 → '23. 6. 30 - 감면한도: 100만원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친환경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2년 연장 - 연장기한: '22. 12. 31 → '24. 12. 31 - 감면한도: 하이브리드 100만원, 전기 300만원, 수소 4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연장 (국회계류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2년 연장 - 연장기한: '22. 12. 31 → '24. 12. 31 - 감면한도: 40만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3항
다자녀가구 구입차량 개별소비세 면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녀가구 구입차량 개별소비세 면제 신설 - 면제대상: 만 18세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구입하는 자동차 - 면제한도: 300만원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후회 없는 삶을 위한 10가지 제안

1. 남들보다 재미있게 살아라

마음껏 웃음을 터뜨리면서 최상의 시간을 가지는 것보다 기분을 들뜨게 하고 기운을 솟구치게 하는 것은 없다. 가능한 이런 웃음을 생활화 한다면 사는 동안 즐거움과 활력이 넘칠 것이다.

2. 통찰력을 얻어라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며 자기만족조차 얻지 못하는 공허하고 초라한 삶을 살게 된다. 통찰력은 우리가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을 때 얻어진다.

3. 깊이를 얻어라

통찰력으로 최선의 나를 발견한다면 깊이로는 최고의 신을 발견한다. 궁극적으로는 지혜가 다가와 우리를 꺼얏으며 통찰력과 깊이가 하나임을 보여준다.

4. 도피처를 마련하라

혼란스럽거나 부담스런 상황에 이르면 도피의 문을 연다. 한계에 부딪혔다는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떠나라. 그리고 돌아와도 괜찮을 때까지 돌아오지 마라. 자신의 영혼을 달래주고 채워주는 곳으로 멀리.

5. 매일 밤 글을 써라

하루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위대한 침묵을 통해 자기 반성을 하고 그 느낌을 글로 쓴다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다.

6. 자신의 직업에 대해 생각하라

내 직업에 영향을 준 고마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신의 직업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다른 이에게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 본다.

7. 재미있는 사람이 되어라

다양한 친구들과 교재를 통해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고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는 일이다. 죽는 날까지 자신을 교육시키자.

8. 잠시 동안 혼자 살아라

혼자 사는 생활은 일상의 끊임없는 욕구에서 한발 물러서는 여유를 가짐으로 평화와 고요의 만족을 느낄 수 있다. 제안이나 경계 없이 우리의 인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

9. 자신을 소중히 대하라

자신을 소중히 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역시 소중히 대할 줄 안다.

10. 아무 것도 잃을 게 없다는 생각으로 살아라

무언가를 잃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인생에 없다. 그러나 잃어야 할 것을 잃고 나면 새로운 인생으로의 비밀스런 준비도 있음을 알아야한다. 그렇게 될 때 인생을 보는 시각은 더 크고 넓어지며 삶의 모든 부분이 전 보다 더 신성하게, 더 재미있게 드러나고 사는 법을 알게 되지 않을까.

최신 판례 예규

Marketing Tax consulting

남편에게서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입주하면서 재건축기간동안 거주하기 위해 아내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에도 1세대 1주택은 적용함

갑이 사망함에 따라 을이 A조합원입주권(A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으로 전환)을 상속받은 이후 A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소득령§156조의2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법규재산-263, 2022.04.08

질 의

-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甲이 그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B주택(대체주택)을 배우자 乙명의로 취득한 경우로서 甲의 사망으로 乙이 A조합원입주권(A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으로 전환)을 상속받은 이후 A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소득령§156조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갑이 그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B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을(갑의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경우로서, 갑이 사망함에 따라 을이 A조합원입주권(A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으로 전환)을 상속받은 이후 A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공동사업에 제공하는 토지가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법규법인-1862, 2022.04.07

질 의

- 공동사업약정을 통해 도시개발사업(택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면서 각자가 사업대상 토지를 취득하여 현물출자 약정 및 소유권 이전의 의사 표시 없이 사업시행 기간동안 단독소유, 단독등기로 유지하는 경우 사업대상 토지의 양도손익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 (갑설)예약매출에 대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작업진행율을 적용하여 사업대상 토지의 양도손익을 인식
- (을설)공동사업협약 효력 발생시기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사업대상토지의 양도손익을 인식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과 다른 내국법인이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각자가 소유한 토지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동사업에 제공하는 토지가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같은 항 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질의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자본거래-1752, 2022.05.23

【 질 의 】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기존 주주들에게 증여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

【 회 신 】

1. 질의사례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같은 항 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3. 질의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당초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사전법규재산-1007, 2022.05.18

【 질 의 】

- (질의1) 상속세및증여세법 41의3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 (질의2) 과세대상이라면, 상증령 31의3①(3)에 따른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계산 시,
- 주식의 증여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 사이에 ① 액면분할, ②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③ 유상증자를 한 경우 발행주식총수 및 순손익액 산정방법

【 회 신 】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증권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1)의 경우 같은 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증여자와 신청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1조의3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질의2)의 경우와 같이 해당 법인이 증권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제5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해당 법인의 주식이 액면분할되어 총 발행주식수가 달라진 경우에는 최종 사업연도의 총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발행주식총수 및 순손익액은 각각 같은 영 제56조제3항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지분 20% 이상 상장사에 기업상속공제 적용

기업상속공제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비상장사는 지분 50%에서 40%로, 상장사는 30% 이상에서 20% 이상만 보유해도 공제적용을 받는다.
 보유기한 10년은 그대로 유지됐다.
 기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소독구충 및 방제서비스업이 추가됐다.

부모로부터 기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해선 최대 600억원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10% 세율로 과세한다. 60억원 초과 증여 재산분에 대해선 20% 세율로 과세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증여를 받은 자녀가 증여일부터 가업을 의무유지하는 사후기한이 7년에서 5년으로 줄어 들고, 대표이사 취임 기한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기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받은 경우 추후 상속 시에도 당초 증여시점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기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중견기업이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 5000억원 미만인 경우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에서 제외된다.

이는 기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다.

지분 10% 넘는 해외자회사 배당금 '비과세'

배당금에 세금을 안 물리는 해외자회사의 기준이 지분 10% 이상으로 정해졌다.

지분율이 10% 이상인 해외자회사가 국내 모회사에 보내주는 배당금은 모회사의 이익금으로 치지 않고, 이익금에 넣지 않기에 과세 대상도 되지 않는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분율 10% 이상, 배당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보유한 해외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만일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해외자회사의 배당시기를 늦추면 된다.

임대업 등 수동적 업종이나 이자·배당 등 수동적인 소득 위주로 영위하는 해외 자회사의 경우 실질세율이 15%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을 물린다. 실질세율은 매출에서 원가 등을 제외한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런 회사들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면 기업들이 서류상

해외에 자산관리회사를 두고 자산을 몰아 준 후 모회사로부터 받은 대여금으로 다시 배당금을 뿌려 세금을 탈루할 수 있게 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사업 부문별로 회계 구분 경리 한 경우 사업 부문별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한다.

계열사들로부터 몰아받은 일감이 전체 매출의 일정 비중을 넘길 경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내는데 사업 부문별로 회계를 쪼개고 사업 부문별 매출도 쪼개서 세금을 줄이거나 세금을 안 낼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다.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수출 목적의 국내 거래와 지식재산권 임대 등 용역의 국외 공급 목적 거래에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 해외에 자회사를 둔 반도체 대기업에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연구개발에 최대 50% 세액공제

국가가 세액공제를 통해 전략적 육성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디스플레이 및 관련 기술이 지정됐다.

신성장 연구개발공제에 소형원자로 개발 및 액화수소 저장기술 등이 포함됐다.

정부가 18일 공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분야가 신설되고 관련 기술이 공제대상으로 지정됐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일반 연구개발공제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공제율은 중소 40~50%, 중견·대기업 30~40%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마이크로 LED, QD(Quantum Dot)(소·부·장)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TFT(Thin Film Transistor) 형성 장비·부품 기술이 지정됐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파운드리형 IP 설계·검증,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PIM), 전력반도체(UHV, 고전압 아날로그IC), 디스플레이용 반도체(T-Con, PMIC) 등이 지정됐다.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

- 기획재정부, 2023. 1

- 기획재정부는 '22.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3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동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3.1.19.~2.3.),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3.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 기본 방향 >

- ◇ '22년 국회 통과 세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세부사항 마련
- ◇ '23년 경제정책방향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

1. 경제 활력 제고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세부 범위 구체화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 합리화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 유턴기업 세제지원 요건 완화
-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요건 규정
- 기업상속공제 및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사후관리 합리화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운용기능재산 확대

2. 민생 안정



-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기준 완화
- 연금계좌 추가납입 범위 확대
-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 열람 실효성 강화
- 위기지역 등 소재 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유예 기간 특례 요건 완화
- 일시적 2주택 양도세·증부세 특례 처분기한 연장
- 다주택자 양도세 증가 한시 배제 기한 1년 연장

3. 조세인프라 확충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구체화
- 신용카드가맹점 등 의무가입대상 업종 확대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강화
-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
- 골프장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개편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 범위 합리화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사유 구체화
-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 개편

II 주요 개정 내용

1 경제 활력 제고

1) 기업경쟁력 제고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제외 범위 등 규정 (법인령)

〈법률(법인법§18의4) 개정내용〉

- ◇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방식을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익금불산입 방식으로 변경
 - ① 해외자회사 요건 및 ② 익금불산입 적용이 제외되는 배당 등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

① (해외자회사 요건)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② (익금불산입 적용제외) 수동적 업종(임대업 등) 또는 수동소득(이자·배당 등) 위주로 영위

하는 해외자회사*가 실제 세부담율이 15% 이하인 경우 이들 자회사의 배당금은 익금불산입 제외(현행과 같이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해외자회사를 말함

※ 수동적 업종이 아닌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해외자회사는 실제 세부담율에 관계없이 익금불산입 적용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식* 특례 신설 (개소령)

- * 국내제조물품은 제조장 반출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나, 제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등은 유통·판매마진이 포함된 소비자 판매가격이 과세표준
-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既 발표('22.7.21.)
- 제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은 과세표준을 판매가격 방식이 아닌 추계*하는 방식 인정('23.7.1~)
- * 국세청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통해 결정·고시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 합리화 (상증령)

- * 특수관계법인 간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여 거래 시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 과세
-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既 발표('22.7.21.)
-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이상으로 구분, ② 사업부문별로 회계 구분경리한 경우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제품·상품의 수출 목적 국내거래, 용역의 국외공급** 목적 거래 과세 제외
 - * 현재 중소·중견기업의 제품·상품 수출목적 국내·외 거래 과세 제외(대기업은 국외거래만 제외)
 - ** (예) 국내에서 개발된 지식재산권을 국외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용역 등

2)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강화

□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조특령)

- *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40~50%, 중견·대기업 30~40%) 적용
- ※ 「'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既 발표('22.12.21.)
-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분야 신설* 및 관련 기술 지정**
 - * (현행)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3개 분야 → (개정안) 디스플레이 분야 추가
 - ** (패널)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마이크로 LED, QD(Quantum Dot) (소·부·장)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TFT(Thin Film Transistor) 형성 장비·부품



○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도체 핵심 기술 추가*

* 파운드리향 IP 설계·검증,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PIM), 전력 반도체(UHV, 고전압 아날로그IC), 디스플레이용 반도체(T-Con, PMIC)

□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조특령)

*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 (중소 30~40%, 중견·대기업 20~30%) 적용

○ 탄소중립 기술을 중심으로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확대(260개 → 272개)하여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한 R&D 지원 강화

구분	주요 기술
지능정보(1개)	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
에너지·환경(2개)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설계·검증·제조 기술
융복합소재(1개)	극세 장섬유 부직포 및 복합필터 제조 기술
탄소중립(8개)	액화수소 운반선의 액화수소 저장 기술, 해상풍력 발전단지 내·외부 전력망에 사용되는 해저케이블 시스템 기술 등

□ 유턴기업 세제지원* 요건 완화 (조특령)

*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시 최대 5년간 100%, 2년간 50% 소득·법인세 감면

※ 「'22년 세제개편안」, 「'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既 발표('22.7.21., '22.12.21.)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유도를 위해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후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기한 연장(2년 내 → 3년 내)

○ 유턴기업이 기존 국내 사업장 내 유희공간*에 신규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 세액감면 적용

* 산업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유희면적에 대한 사전 확인 필요

□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비 R&D 세액공제 적용 (조특령)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既 발표('22.7.21.)

○ 반도체 등 핵심산업 분야의 인력양성 지원을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기업이 지출하는 계약학과 운영비를 포함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범위 등 마련 (조특령)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세액공제

〈 법률(조특법§25의6) 개정내용 〉

◇ 새로운 미디어플랫폼을 활용한 영상콘텐츠 제작활성화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제작비 추가
 ▸ OTT 콘텐츠의 범위 등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OTT콘텐츠 범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되고 등급분류* 받은 영상콘텐츠로 규정
-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를 포함

□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요건 규정 (조특령)

* 자산의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함으로써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 법률(조특법§28의4) 개정내용 〉

◇ 내국인이 에너지 절약시설을 '23.12.31까지 취득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 가능
 ▸ 에너지 절약시설의 범위, 손금산입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에너지 절약시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 「물재이용법」에 따른 중수도 및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기기 등
- (손금산입 방법)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의 (대기업) ±50% (중소·중견기업) ±75% 범위 내에서 감가상각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조특령)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既 발표('22.7.21.)

〈 법률(조특법§29의8 신설) 개정내용 〉

◇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
 ▸ 대상 업종, 상시근로자 범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기본공제 추정세액 계산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

- * 기존 제도와의 연속성·통일성을 고려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의 기존 요건 중심으로 통일
- (대상 업종)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
- (상시근로자 범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 * 근로계약 1년 미만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임원·최대주주 등 제외
- (청년등 상시근로자 범위) 청년 정규직근로자(15~34세),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상이자 등



□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인정 확대 (법인령)

- ※ 「'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既 발표('22.12.21.)
- 해외자원개발사업자(해외자원개발을 하는 해외건설사업자 포함)가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외 현지법인에 대해 채무보증을 한 경우, 그 채무보증에 따른 대위변제로 발생하는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산입

□ 벤처펀드에 출자한 적격펀드의 벤처기업 주식 관련 손익 비과세 (소득령)

- ※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에서 既 발표('22.11.4.)
-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적격펀드*가 벤처펀드 출자를 통해 벤처기업 투자 시, 벤처기업 주식 거래·평가손익 비과세
 - * 「자본시장법」상 펀드로서, 연 1회 이상 결산·분배하고,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하는 펀드

3)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등 제도 합리화 (상증령)

-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既 발표('22.7.21.)
- 가업상속공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
 - * (현행) 지분 50%<상장 30%> 이상 10년 보유 → (개정안) 지분 40%<상장 20%> 이상 10년 보유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소득·구충 및 방제서비스업 추가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완화 등 (조특령)

- *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최대 600억원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10%(60억원 초과분은 20%) 세율로 과세
-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既 발표('22.7.21.)
-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수증자의 가업유지 요건 완화
 - 증여일부터 7년 → 5년까지 가업 유지, 대표이사 취임 기한은 5년 → 3년으로 단축
-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받은 경우 추후 상속시에도 당초 증여시점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판정

□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외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설정 (상증령)

- * 최대주주 주식 상속·증여 시 20% 할증평가
-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既 발표('22.7.21.)

〈 법률(상증법§63) 개정내용〉

- ◇ 상속·증여재산 평가 시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외대상에 중견기업 추가
 - 중견기업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위임

-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규정
 - * 기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과 동일한 수준

4) 금융시장 활성화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운용가능재산 확대 (조특령)

- * 계좌 내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보유하여 발생한 소득을 200만원(농어민·서민형은 4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하고, 그 초과분은 9% 분리과세
- ※ 「'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既 발표('22.12.21.)
- 자금시장 수급여건 개선을 위하여 비과세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운용가능재산에 회사채 및 K-OTC 주식(중소·중견기업) 추가

2 민생 안정

1)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 월세세액공제 대상 주택기준 완화 (조특령)

- 월세 세액공제(최대 17%, 연 750만원 한도)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 기준*을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 * (현행)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²)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소득령)

-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既 발표('22.7.21.)
- 1주택 고령가구의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에 대해 연금계좌(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 등) 추



가납입(누적 한도 1억원) 허용

구분	내용
대상자	부부 중 1명 60세 이상 & 부부 합산 1주택자 * 종전주택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
대상주택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종전주택 기준)
납입금액	종전주택 양도가액에서 신규주택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 * 1억원 한도(생애 누적)
납입기간	종전주택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입
사후관리	종전주택보다 큰 가액의 주택을 취득하는 등의 경우에는 납입액을 연금계좌에서 배제(5년간 사후관리)

□ 청년 범위 현실화를 통한 청년 지원 강화 (조특령)

- ※ 「'22년 세계개편안」에서 既 발표('22.7.21.)
- 조특법 내 청년 연령범위 상한을 29세에서 34세로 확대·통일*
 - * 통합고용세액공제(신설),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감면,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등

□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 열람 실효성 강화 (국징령)

〈법률(국징법§109) 개정내용〉

- ◇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을 허용하고, 열람 장소를 전국 세무서로 확대
 -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임차인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 임대인 동의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임차인 범위를 1,000만원 초과 보증금을 계약한 임차인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기자재 추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 * 농민이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가격으로 기자재를 구입하고 사후에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는 제도
-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 지원을 위해 다겹보온덮개, 옥수수망 개량 물꼬, 이탄 등을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에 추가

□ '23년도 탁주·맥주 종량세율 결정* (주세령)

- * 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의 70~1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
- 소주 등 증가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및 주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탁주·맥주에 대해

물가상승률의 70%만 반영하여 종량세율 조정('23.4.1~)

- (맥주) 1ℓ 당 885.7원(30.5원*↑), (탁주) 1ℓ 당 44.4원(1.5원↑)

* '22년 CPI(5.1%)의 70%인 3.57% 반영 ⇒ 855.2원('22년 세율) × 3.57% = 30.5원

2)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납부기한 등 연장·유예시 기간 특례 요건 완화 (국징령)

- 위기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소재 모든 기업*에 대해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등의 연장·유예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 (현행) 위기지역·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기간 특례(최대 2년) 적용

** 일반적인 경우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등 연장·유예 가능

(사유: 사업 손실, 부도우려, 질병 등으로 인해 국세를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 기업의 중고자산 교육기관 기증 시 세액공제 요건 규정 (조특령)

〈법률(조특법§8의3) 개정내용〉

- ◇ 내국법인이 사용하던 연구시험용 시설 등 중고자산을 교육기관에 무상 기증 시 기증자산 시가의 10% 세액공제 신설
 - 중고자산의 범위, 기증 대상 교육기관의 범위 등 세부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

- (교육기관) 대학(원)·산학협력단, 직업계 고등학교,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 (중고자산)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교육기관에서 반도체 관련 연구·교육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설비
 - * 예: 웨이퍼 제작 공정, 절삭 및 접착 공정, 계측 공정 등에 사용되는 설비

□ 인적용역 사업자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수입금액 상향 (소득령)

-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 추계신고 시 수입금액에서 일정비율(단순경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비로 공제하여 소득금액 산출
-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수입금액을 2,400만원→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
 - * 토크서비스배달원,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학습지방문강사 등

3) 지역 균형발전 강화

□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범위 규정 (조특령)



〈 법률(조특법§121의17) 개정내용 〉

- ◇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한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 감면대상 사업, 감면한도 등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현행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과 대상 업종 및 투자·고용요건 등을 동일하게 적용

□ 기업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조특령)

〈 법률(조특법§99의4) 개정내용 〉

- ◇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농어촌주택의 소재지 요건 완화
 - 농어촌주택 소재지에서 제외되는 도시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

-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기업도시 개발구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농어촌주택 소재지에 포함

* 인구감소지역으로서 기업도시개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 : 태안군, 영암군, 해남군

□ 지방 저가주택(종부세) 및 농어촌주택(양도세) 특례* 적용 확대 (종부세령·조특령)

-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비수도권으로서 광역시·특별자치시 등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종부세·양도세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 수 제외
-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모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부동산 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특례 적용

* 지방 저가주택: (현행) 규정없음 → (개정) 연천군·용진군·강화군 신설
농어촌주택 : (현행) 연천군·용진군 → (개정) 강화군 추가

4) 부동산세제 정상화

□ 일시적 2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 처분기한** 연장 (소득령·종부세령)

- *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특공제(최대 80%) 적용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 ** (양도세)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 2년, 그 외 3년, (종부세) 2년
-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
- ※ 적용시기: (양도세) '23.1.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종부세) '22년 특례 신청분에도 적용

□ 다주택자 양도세 증가 한시 배제 기한 1년 연장 (소득령)

- ※ 「 '23년 경제정책방향」 에서 既 발표('22.12.21.)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증가*를 배제하는 기한을 '23.5.9.에서 '24.5.9.까지로 1년 연장
 - * 증가세율: (2주택) 기본세율+20%p (3주택 이상) 기본세율+30%p,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미적용

□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임대기간 합산 규정 신설 (소득령)

- * 임대료 인상률(5% 이하), 임대기간(직전 계약 1년 6개월 이상 + 상생 계약 2년 이상) 요건 준수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특공제(최대 80%) 2년 거주요건 면제
- 임대인의 귀책사유 없이 임차인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 시 종전·신규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 판정
 - * 임차인 퇴거 후 종전계약보다 임대료를 낮춰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계약 체결 등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종부세령)

- *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부세 과세체계 (원칙) 단일세율(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 기본공제 미적용 (예외) 누진세율(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 기본공제(9억원) 적용
-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정비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 단일세율(2.7%, 5.0%)이 아닌 누진세율 적용*(0.5~2.7%, 0.5~5.0%)
 - * 해당 임대주택과 재산세 비과세 주택,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만 보유한 경우로 한정

□ 사원용 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 상향 (종부세령)

- * 종업원에게 무상·저가로 제공하는 사원용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이거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 사원용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



3 조세인프라 확충

1)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세부내용 규정 (조특령)

〈 법률(조특법§104의5) 개정내용 〉

-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신설(적용기간: '24.1.1.~'25.12.31.)
 - 연간 한도 300만원(세무·회계법인의 경우 600만원), 최소공제액 1만원
 - ①대상 사업자, ②공제금액은 시행령으로 위임

- ① (대상 사업자)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자
- ② (공제금액) 명세서에 기재된 상용근로자 수 × 200원

□ 신용카드가맹점 등 의무가입대상 업종* 확대 (소득령)

- *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거나 의료업·변호사업 등 전문업종인 경우 →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
- 3개 업종(애플런스 서비스업, 낚시어선업, 스테디카페)을 추가(197개→200개 업종)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소득령)

- *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해야하는 업종
-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既 발표('22.7.21.)
- 현금매출 비중, 건당 현금거래 금액이 높은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112개→125개 업종)
 - *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육류 소매업, 자동차 중개업,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등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강화(부가령·소득령)

- ※ 의무발급대상자 확대는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既 발표('22.7.21.)
- 의무발급 대상을 전년도 수입금액 1억원 →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24.7월 시행)
- 최초로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이후 계속하여 발급 의무 부여('23.7월 시행)
 - * 현재는 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변동

□ 판매·결제 대행중개자로 제출대상 확대 (부가령)

-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既 발표('22.7.21.)
- 인터넷 전자계시판을 운영하여 판매·결제를 중개하는 사업자*를 중개자료 제출대상에 포함
 - * 구체적인 대상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에 규정

□ 특수관계자의 증명자료 제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관세령)

-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既 발표('22.7.21.)
- 성실납세 유도 및 공정한 과세가격 심사를 위해 증명자료의 미제출·거짓제출 시에도 과세자료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
 - *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시) 1억원 이하
(증명자료 제출 관련 시정요구 미이행 시) 2억원 이하

2) 조세회피 관리 강화

□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 (소득령)

-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既 발표('22.7.21.)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대상과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범위를 확대하여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 관리 강화('24년 시행)
 - (가입대상) 전문직·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전체 복식부기의무자
 - (미가입시) 1대를 초과하는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 → 100% 필요경비 불산입*
 - * 전문직·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아닌 경우 시행 후 2년간('24.'25년) 50% 필요경비 불산입

□ 국세기본법 상 명단공개 기간 설정* (국기령)

- * 현재는 기간 제한 없이 계속 공개(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만 5년)
- 명단공개 대상자의 지나친 권익침해를 방지하고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세포탈범 등에 대한 명단공개 기간 설정

유 형	개 정 안
조세포탈범	(원칙) 5년, (예외) 상습적 조세포탈자, 면세유부정유통자 등 10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년
가공·허위세금계산서 발급	5년



□ 거짓진술, 직무집행 거부·기피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국기령)

〈 법률(국기법§88) 개정내용 〉

◇ 탈세 방지를 위해 거짓진술, 직무집행 거부·기피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인상(최대 2천만원 > 5천만원)

- 수입금액 200억원까지는 현행 과태료 금액을 유지
- 수입금액 200억원 초과부터 100억원 단위로 1,000만원씩 과태료 수준을 인상*하여 최대 5천만원 부과
 - * 구간별 수입금액 대비 과태료 비율이 0.1%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정비

3) 조세제도 합리화

□ 영농상속공제 제도 합리화 (상증령)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既 발표('22.7.21.)

〈 법률(상증법§18의3) 개정내용 〉

◇ 피상속인·상속인이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형 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배제(사전)·추징(사후)

- (공제배제 벌금형) 「조세범처벌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조세 포탈·회계 부정*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 *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5% 이상인 경우
- (피상속인 요건 강화) 가업상속공제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공제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의 영농종사기간 강화(2년→10년)

□ 골프장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개편 (개소령)

-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 개별소비세 부과 취지 등을 감안하여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비회원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23.7.1~)

현행		⇒	개정안	
회원제 골프장	12,000원		회원제 골프장	12,000원 ²⁾
비회원제 골프장	-	비회원제 골프장		
		대중형 골프장 ¹⁾	-	

1) 이용료 주중 188,000원, 주말 247,000원 미만인 비회원제 골프장(문체부 고시, '23년 기준)

2) 교육세·농특세(7,200원) + 부가가치세(1,920원) 포함시 총 21,120원

□ 세무사·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 현실화 등 (세무사령·관세사령)

- ※ (시행시기) 1년 유예 후 '24년부터 시행, ②, ③은 세무사만 해당
- ① (응시 수수료 현실화) 세무사·관세사 시험의 출제 및 채점 관리강화를 위해 시험 응시 수
 수료를 적정수준*으로 현실화
- * [세무사] (현행) 1·2차 통합 3만원 → (개정) 1차 3만원 + 2차 3만원 [관세사]
 (현행) 1·2차 통합 2만원 → (개정) 1차 3만원 + 2차 3만원
- ※ (기타 자격시험 수수료) 회계사 10만원, 변리사 10만원, 감평가 8만원, 노무사 7.5만원
 (1차 5만원+2차 (1차 5만원+2차 (1차 4만원+2차 (1차 3만원+2차
 5만원) 5만원) 4만원) 4.5만원)
- ② (영어 성적 인정기간 확대) 실질적인 응시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영어시험(토익 등) 성
 적 인정기간을 2년→5년으로 확대
- ③ (청각장애인 영어 성적 기준 완화) 영어 듣기 능력 측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청각장애인의
 영어시험 합격 기준점수를 완화

□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시 거래정보 입수 절차 등 구체화 (관세령)

〈 법률(관세법§254) 개정내용 〉

- ◇ 플랫폼 기업 등으로부터의 통관 전 거래정보 입수 근거 및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하는 소비자에 대한 통관·납세 관련 안내 근거 신설
 ·구체적인 ①거래정보 및 ②안내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① (거래정보) 신속통관 및 위해물품 효과적 적발을 위해 통관 전 플랫폼 기업에 주문·수신인
 등 거래정보 요청
- ② (안내 사항) 소비자 편의 제고 및 불법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시 관
 세청이 소비자에게 품명·납부세액 등 안내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1) 납세자 권익 보호

□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 범위 합리화 (국기령)

구분	현행	개정안
혈족	6촌 이내	4촌 이내
인척	4촌 이내	3촌 이내



그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 친생자가 타인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혼외자의 생부 또는 생모
-----	--	--

※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도 혈족 6→4촌, 인척 4→3촌 등으로 기 개정('22.12.27. 공포)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사유 구체화 (부가령)

〈 법률(부가법§35) 개정내용 〉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사유를 예외적으로 규정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발급제한 사유를 규정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

▸ 납세자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발급 제한하되, 구체적 사유는 시행령 위임

○ 납세자에게 분명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①, ②, ③ 및 특수관계 과세자료 제출명령 불이행 ④시 발급 제한

* ① 관세조사 등을 통해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시에도 반복하는 경우

② 세관장이 미리 제공한 세액신고 오류 정보에 대해 조치하지 않은 경우

③ 제출한 수입거래·증빙과세자료가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경우 등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④ 특수관계 과세자료 제출명령에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매입자발행계산서 발행대상방법 구체화 (소득령, 법인령)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既 발표('22.7.21.)

〈 법률(소득법§163의3, 법인법§121의2) 개정내용 〉

◇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신설

* 면세재화 공급자가 부도·폐업 등 사유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 확인을 받아 직접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23.7월 시행)

▸ 발행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 위임

○ (대상) 건당 공급가액 5만원 이상 거래

○ (절차) 매입자가 거래사실 확인 신청(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내) → 공급자 관할세무서에서 거래사실 확인 → 매입자가 직접 계산서 발행

2) 납세편의 제고

□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 개편 (관세령)

* 단일간이세율(20%, \$1,000이하) + 물품별 간이세율(20~55%, \$1,000초과)

-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既 발표('22.7.21.)
- 신속통관 및 여행자 편의 제고를 위해 최저세액 자동 산출이 가능하도록 단일간이세율 구간 (\$1,000 이하, 20%)을 폐지
- 폐지로 인한 세 부담 증가 사례 방지를 위해 물품별 간이세율 인하*
 - * (현행) 20~55% → (개정안) 15~47%

□ 공익법인 의무이행 보고* 대상 합리화 (법인령)

- * 기부금단체인 공익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 4개월 이내 공익법인의 의무(기부금 모금·활용실적 공개, 전용계좌 개설·사용 등)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
- 기부금 모금 실적이 없는 어린이집·유치원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

□ 상속세 물납 대상 문화재 등 정의 및 신청·허가 절차 등 마련 (상증령)

〈 법률(상증법§73의2) 개정내용 〉

◇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물납제도 도입('21년 개정, '23년부터 시행)

-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허용*
 - * 문화재·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한도로 물납 가능
- 물납대상 문화재·미술품 정의, 물납 신청·허가 절차 등은 시행령에 위임

- (물납 대상) 문체부장관이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을 요청하는 문화재·미술품
 - (문화재) 「문화재보호법」상 유형문화재 또는 민속문화재로 지정·등록된 문화재
 - (미술품) 회화·판화·조각·공예·서예 등 미술품
- (물납 절차) 물납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문체부 평가 등을 거쳐 상속세 결정 기한까지 물납 허가여부 결정·통지

참고 - 시행령 개정안(신규*) 세수효과 : △200억원

* '22년 세제개편안('22.7.21. 발표)에 포함된 세수효과를 제외한 수치임

(단위: 억 원)

주요 항목	세수효과
법인세	△2,500
개별소비세(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포함)	+2,100
주세(교육세, 부가가치세 포함)	+200
합 계	△200



추진 일정

1 개정대상 시행령 : 총 23개

- 내국세(19개)
 -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종합부동산세법 · 부가가치세법 · 개별소비세법 · 주세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교육세법 · 인지세법 · 조세범처벌절차법 · 세무사법 · 농어촌특별세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관세(4개)
 - 관세법 · 관세사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 추진일정

- '23.1.18.(수), 시행령 개정안 발표
- '23.1.19.(목)~2.3.(금), 입법예고
- '23.2.21.(화), 국무회의
- '23.2월말, 공포

2023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 국세청, 2023. 1

- (신고대상)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2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금)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144만 명에게 '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월 18일(수)부터 발송합니다.
 - *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회원, 서점 등
 - 안내문에 기재된 신고 시 유의사항, 전자신고 방법,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지원) 홈택스(hometax.go.kr)와 모바일 앱(손택스)에서 더욱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는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과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매출자료와 매입자료도 제공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신고지원) 주택임대사업자는 신고 경험이 적고 고령자가 많아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안내문의 QR코드를 이용해 전자신고 화면으로 바로가기가 가능하며, 전자신고 방법과 수입금액검토표 작성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21년 귀속)에 신고한 임대주택을 불러오기 하여 변경된 사항만 수정하는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올해 5월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서'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 (신고대상)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업자 포함)는 '22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금)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출판사,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입니다.
- (제출 서류) '22년 중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 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 작성대상 업종 :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학원업, 대부업, 의료업
- (안내문 발송) 국세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144만 명에게 '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월 18일(수)부터 발송합니다.
 -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규정된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자
 - 안내문은 원칙적으로 모바일로 발송하고, 60세 이상자와 주택임대 사업자는 우편으로 발송하며, 총 6개 유형으로 보내드리니 본인 유형에 맞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 발송 현황 |

안내문 유형	안내방법		안내인원(명)
	60세미만	60세이상	
(가) 전산분석자료 제공자	모바일	우편	29,215
(나) 주택매매업자	모바일	우편	1,107
(다) 주택임대사업자	우편	우편	598,169
(라) 개인과외교습자	모바일	우편	9,214
(마) 복식부기의무자	모바일	우편	158,230
(바) 간편장부대상자	모바일	우편	649,026
합 계			1,444,961

* 모바일 안내문 : 참고 1, 서면안내문(주택임대(다)유형) : 참고 2

- (홈택스 신고)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hometax.go.kr)와 모바일 앱(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모바일 로그인 > 신고/납부 > 사업장현황신고

- ※ 전자신고 가능 시간 : 매일(공휴일 포함) 06:00 ~ 24:00
- 무실적인 경우 모바일 신고가 간편하며(참고6참조), 사업실적이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도 모바일 신고 이용 가능*합니다.
 - * 의료업, 주택매매업은 모바일 신고 시 무실적 신고만 가능
- 신고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동영상」을 게시*하였으니 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사업장현황신고
 - ▶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동영상자료실

2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신고도움 서비스」와 「미리채움」

① 신고도움 서비스

- (신고도움자료)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및 모바일 앱의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홈택스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모바일 신고/납부 > 사업장현황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모든 사업자에게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①), 업종별 신고시 유의사항(②) 및 수입금액 신고누락 사례(③)를 안내하며,
 - 전년도 사업장 현황신고자 중 성실신고 안내가 필요한 사업자*에게는 신고내용을 분석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 수입금액 과소신고, 현금매출 비율 저조, 비보험 비율 저조 의료업자 등

② 미리채움 서비스

- (미리채움) 사업자의 간편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모바일 전자신고에 각종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모든 사업자에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금액 등 매출자료 7종과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자료 등 매입자료 2종을 제공합니다.

|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현황 |

제공자료		제공기준	인원(명)
매출자료	신용카드 발급금액*	'22.1 ~ 11월까지 발급	424,881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22.1 ~ 11월까지 발급	331,784
	판매(결제)대행 매출 자료*	'22.1 ~ 9월까지 매출	85,985
	제로페이 매출 자료*	'22.1 ~ 11월까지 매출	66,381
	전자계산서 발급금액*	'22.1 ~ 11월까지 발급	146,340
	주택매매업 부동산 양도 자료	'22.1 ~ 10월까지 등기	1,135
	수출통관 자료	'22.1 ~ 10월까지 통관	248
매입자료	전자계산서 수취금액*	'22.1 ~ 11월까지 수취	382,781
	전자세금계산서 수취금액*	'22.1 ~ 11월까지 수취	691,545

* '22년 과세기간 전체 자료는 '23. 1. 28.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대상 사업자1)는 전년도 수입금액 불러오기 기능2)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1) 작성대상 업종 :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학원업, 대부업, 의료업

2) ('22년) 주택임대, 주택매매, 의료업자 제공 → ('23년) 학원사업자 추가

| 수입금액 검토표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현황(업종별) |

구 분		제 공 항 목
주택매매	부동산 양도자료	소재지, 면적, 양도가액
의료업자	전년도 사업장시설	진료실 면적, 병상수 등
학원사업자	전년도 사업장시설	강의실 수, 사무실, 책상수 등

3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한 신고지원

- (신고대상)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금)까지 신고해야 합니다.(참고4 참조)
 - (주택수 계산) 부부합산 소유 기준으로 계산하며, 공동소유주택의 지분은 아래와 같은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 수에도 가산됩니다.
 - ①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
 - ②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 * 단,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
 - (수입금액 계산) 월세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이며, 간주임대료는 부부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만 대상입니다.(정기예금이자율 1.2%)

- (신고지원 서비스) 주택임대사업자는 신고 경험이 적고 고령자가 많아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며, '21년 귀속 신고자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임대수입금액 발생이 예상되는 납세자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 전·월세 확정일자, 월세 현금영수증, 전세권·임차권 등기 자료 등
 - 휴대폰으로 안내문 뒷면의 QR코드를 인식하여 전자신고서 작성방법(①),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방법(②)을 숙지한 후에 모바일 앱(손택스)(③)에 접속하여 신고하거나,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누리집에도 홈택스·모바일 전자신고 동영상과 솜뿔 동영상을 게시하였으니 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사업장현황신고 ▶ 동영상자료실

- (미래채움 서비스)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시 전년도 임대명세와 '22년 주택보유자료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임대명세 조회(①)를 클릭하면 전년도에 신고한 임대물건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만 수정 입력하면 됩니다.
 - '22년 신규로 임대한 주택은 신고도움자료(②)의 국내 주택보유 내역을 선택하여 임차인정보, 임대정보를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 * 국내 주택보유 내역에 조회되지 않는 임대주택은 소재지, 임차인, 임대정보 직접 입력

4 신고 시 유의할 사항

- (성실신고)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올해 5월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서'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산세 대상) 의료업·약사업·수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0.5%)를 부담하게 되며,
 -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하게 됩니다.(신규사업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은 제외)

-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할 때 「등록임대주택 요건1) 충족기간」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기재하지 않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적게 적용2)받아 소득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1) ①세무서·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 ②임대보증금 등 증가율 5% 이하 등
- 2) (필요경비) 등록임대 60%, 미등록임대 50%, (공제금액) 등록임대 4백만원, 미등록임대 2백만원

| 등록임대주택 총족기간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세부담 비교 |

구 분	① 등록임대주택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등록)	② 미등록임대주택 (① 이외의 경우)
총수입금액	2,000만원	2,000만원
필요경비 (-)	1,200만원 (60%)	1,000만원 (50%)
공제금액 (-)	400만원	200만원
과세표준 (=)	400만원	800만원
세율 (×)	14%	14%
산출세액 (=)	56만원	112만원

⇒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세부담이 56만원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2천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의 사례입니다.

- (신고검증)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니, '정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22년 귀속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참고자료

참고 1 -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

- 주택임대 수입금액 : 월세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적용이자율 1.2%)
- 과세대상 :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1)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2)
- 1) 월세수입이 있는 1주택자 중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또는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임
 - 2)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보증금 등에 대해 과세 제외
(보증금 등에 대해서만 과세제외하며, 월세수입은 과세 대상임)

※ 과세 요건(주택수 기준)

주택 수 (부부합산)	과세대상 0	과세대상 ×
1주택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 ✓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전세금
2주택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월세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보증금·전세금
3주택 이상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월세 수입 ✓ 비소형 주택 3채 이상 소유 &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 원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 비소형 주택 3채 미만 보유한 경우 보증금·전세금 ✓ 비소형 주택의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 원 이하

※ 간주임대료 대상 여부 사례

주 택 소유자	주택 보유 현황				간 주 임대료 대 상	비 고
	소형주택		비소형주택			
	주택수	보증금 합계	주택수	보증금 합계		
A	2채	4억 원	3채	5억 원	0	비소형주택 보증금 5억 원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 계산
B	-	-	2채	5억 원	×	비소형주택 3채 미만이므로 간주임대료 대상 아님
C	-	-	4채	3억 원	×	비소형주택 3채 이상이나 보증금합계 3억 원 이하이므로 간주임대료 대상 아님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 행정안전부, 2023. 1

-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 *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 (☞ 1~3%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며,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됩니다.
 - * 양도세·취득세: (신규주택 취득 시점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2년, (그 외) 3년
종부세: 2년

〈 종전주택 처분기한 〉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종전주택 처분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조정*)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 신규주택 취득 시점 기준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 (그 외)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 종합부동산세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목 및 주택 소재지 구분없이 3년으로 처분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3년 외부감사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금융감독원, 2023. 1

주요 내용

- ◆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23.2.14.)이 도래함에 따라, 회사가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최근 입법예고된 외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간 상장사에 준하는 감사인 선정절차*가 적용되던 대형비상장사 범위가 축소되고
 - * ①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의무 부여, ② 감사인 자격을 회계법인으로 제한, ③ 3년 연속 동일감사인 선임 의무화 등
- 규제완화 혜택이 2023사업연도부터 즉시 적용되므로 자산 1~5천억원 비상장사는 해당여부 등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1 개요

- 新외부감사법 시행 5년차를 맞았지만 아직도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선임 기한, 선정절차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
- '22년에 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 등으로 189사가 지정되었으며, 지정회사 수가 전년(128사) 대비 47.7%(61사) 증가
-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감사인이 지정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회사 유형별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안내함

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

(단위: 사)

구분	'19년	'20년	'21년	'22.11월
외부감사 대상회사	32,431	31,744	33,250	37,992
지정(선임기한·절차위반)	92	52	128	189



2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

◇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기한, 선임대상 사업연도, 감사인 자격요건, 선정절차가 상이하므로, 해당유형을 확인한 후 선임기한·절차 등 감사인 선임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① (주권상장회사) 등록 회계법인(現 40개)만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함
 - *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필요)가 선정한 감사인
- ② (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 회계법인(감사반 불가)만을 선임*해야 하며,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함
 - *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필요)가 선정한 감사인
- 한편, '22.12.22. 입법예고된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대형비상장사의 기준변경(1천억→5천억)은 2023사업연도부터 즉시 적용

기 존	개 선	
전기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비상장주식회사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or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5조원이상) 소속회사
	②	이외 비상장주식회사
		1천억원 이상 (현행 유지)
		5천억원 이상 (기준상향)

- ③ (비상장주식회사) ① 전기에 외부감사를 받았던 계속감사 회사는 당기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5일 이내, ② 당기 초도감사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함
 - * 회사의 감사가 선정하되,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자본금 10억원미만)에는 회사가 선정
 - 계속감사 회사의 감사인 선임기한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23년부터는 법령상 선임기한('23.2.14.)까지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예외없이 감사인이 지정되므로 유의할 필요
- ④ (유한회사) 비상장주식회사와 사실상 동일하며, 회사의 감사 유무에 따라 감사인 선임절차에 차이*가 있음
 - * 회사의 감사가 선정, 다만 ①감사가 없는 경우 회사가 선정, ②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 사원총회의 승인 필요

회사 유형별 선임제도 요약(붙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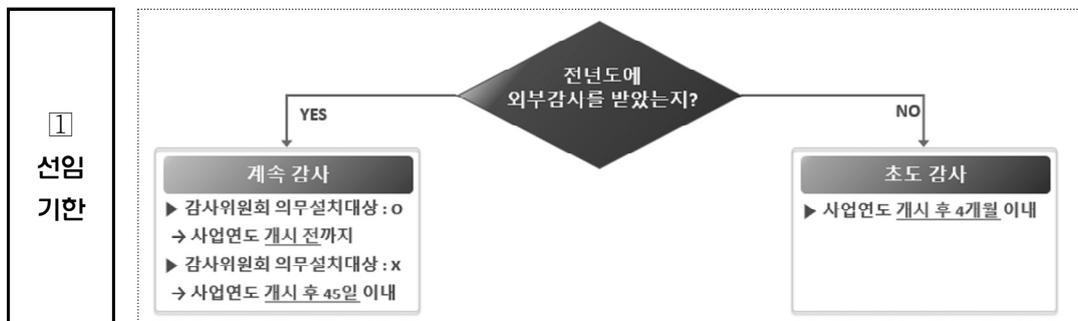
회사 유형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D)]	사업 연도	자격요건	감사인 선정절차
① 주권상장회사	D + 45일 (사업연도 개시 전**)	3년	등록회계법인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②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			회계법인	
③ 비상장주식회사	D + 45일	1년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감사 또는 회사(사원총회 승인***)
④ 유한회사	D + 4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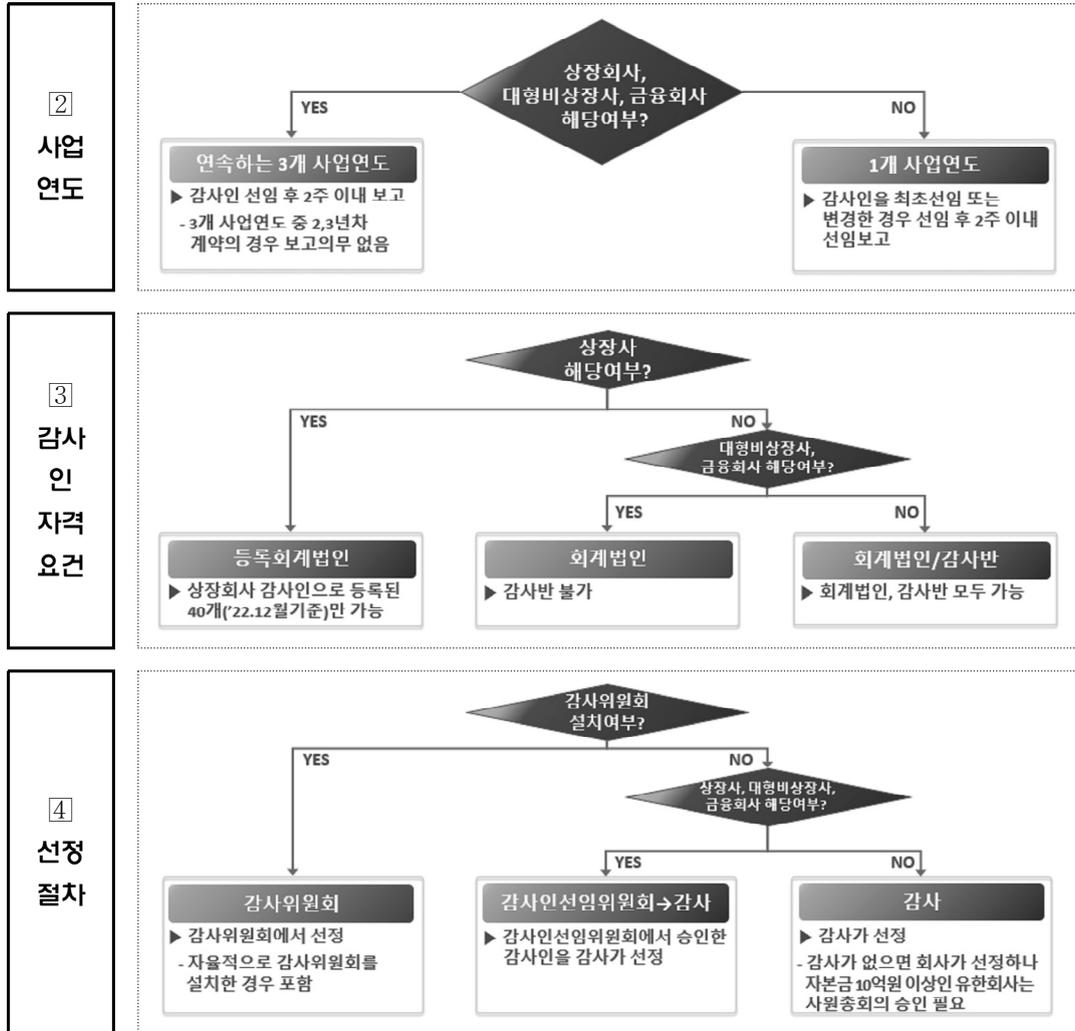
* 단, 초도감사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
** 상법 등에 따른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의 선임기한은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임
*** 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유한회사는 사원총회 승인 필요

3 향후 계획

-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 안내
- 비대면(온라인) 설명회를 개최('23.1월)하여 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의 주요내용을 안내하는 한편, 홈페이지 문의(Q&A) 또는 유선질의(☎ 02-3145-7767/7763)시 신속하게 답변할 예정

붙임 1 - 감사인 선임제도 흐름도





붙임 2 - 회사 유형별 감사인 선임제도

1 주권상장회사*

*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상장회사

-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3.2.14.까지 감사인을 선임(감사계약 완료)
- 다만,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상법 §542의11①, 영 §37①)은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22.12.31.) 감사인 선임

- (선임대상 사업연도)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
 - 감사인 지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3개 사업연도 중 감사인 교체 불가
- (감사인 자격)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現 40개)만 선임 가능
 - ※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 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 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함에 유의
- (선정절차)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는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
 -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이 아님에도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 포함
 - 다만,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승인한 감사인을 감사가 선정
- (선임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 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
 - 감사인의 변경여부와 무관하게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선임할 때마다 보고* 필요
 - * 예) 회사가 甲회계법인과 3개 사업연도의 감사계약이 종료된 후 다시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甲회계법인을 선임할 경우에도 선임보고 필요

2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 금융회사**

- * ('23.1.1.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 전기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 ②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5조원이상) 소속회사 : 전기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 ③ 이외에 비상장주식회사 : 전기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 및 농협은행
-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3.2.14.까지 감사인을 선임(감사계약 완료)
 - 다만,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인 비상장 금융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22.12.31.) 감사인 선임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법§3③의 회사는 제외)
- (선임대상 사업연도)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
 - 지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3개 사업연도 중 감사인 교체 불가
- (감사인 자격) 회계법인만 선임 가능(감사반 불가)



※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 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함에 유의

- (선정절차)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승인하고 회사의 감사가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
 - 다만,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는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
 -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이 아님에도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 포함
- (선임 보고) 회사는 감사인 선임 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
 - 감사인의 변경여부와 무관하게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선임할 때마다 보고 필요*
 - * 예) 회사가 甲회계법인과 3개 사업연도의 감사계약이 종료된 후 다시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甲회계법인을 선임할 경우에도 선임보고 필요

3 비상장주식회사

- (외부감사대상)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등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회사
 - ①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 ② 매출액 500억원 이상(12개월 미만시 환산)
 - ③ 다음 중 2가지 이상 해당(①자산 120억원 이상, ②부채 70억원 이상, ③매출액 100억원 이상, ④종업원수 100명 이상)
-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3.2.14.까지 감사인을 선임(감사계약 완료)
 - 단, 전년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임의감사만을 받은 회사 포함)은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인 '23.4.30.까지 선임
- (선임대상 사업연도) 1개 사업연도마다 감사인을 선임
- (감사인 자격) 회계법인, 감사반 모두 선임 가능
 - ※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 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 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함에 유의
- (선정절차) 감사(또는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선정
 - * 회사가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 다만,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자본금 10억원 미만)에는 회사가 선정

- (선임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최초선임 또는 변경할 경우 선임 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
 -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선임보고 필요 없음

4 유한회사

- (외부감사대상)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등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회사
 - ①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 ② 매출액 500억원 이상(12개월 미만시 환산)
 - ③ 다음 중 3가지 이상 해당(①자산 120억원 이상, ②부채 70억원 이상, ③매출액 100억원 이상, ④종업원수 100명 이상, ⑤사원수 50명 이상)
 - ※ 2019년 11월 1일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등기한 날부터 5년까지는 주식회사의 요건과 동일하게 판단함에 유의
-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3.2.14.까지 감사인을 선임(감사계약 완료)
 - 다만, 초도감사*인 경우 4개월 이내인 '23.4.30.까지 선임
 - * 직전 사업연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임의감사만을 받은 회사 포함)
- (선임대상 사업연도) 1개 사업연도마다 감사인을 선임
- (감사인 자격) 회계법인, 감사반 모두 선임 가능
- (선정절차) 감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정
 - 다만, ①감사가 없는 경우 회사가 선정, ②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 사원총회의 승인 필요
- (선임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최초선임 또는 변경할 경우 선임 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
 -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선임보고 필요 없음

참고 1.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안내

- (구성원수) 반드시 5인 이상(5~6인)
- (구성원) 각 구성원별 한도 있음(사내이사·대표이사 등은 불가)
 - ①감사 1명, ②사외이사 2명 이내, ③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④주주 1명(지배주주 등을 제



외*하고 의결권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 ⑤채권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1

* 지배주주(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포함), 회사의 임원인 주주, 위원으로 참석하는 기관투자자 주주는 제외

- (대리행사) 기관투자자·주주·채권금융회사 위원이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가능
- (외부전문가) 법령상 자격을 갖춘 위원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충원이 가능
 - * 외부전문가의 대리인 선임은 불가능
-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 중 호선으로 선출하되,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 감사를 제외한 위원 중 호선하여 결정
 -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내부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원장이 될 수 없음
- (회의 개최) 재적위원 2/3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원 전원 동의시(5~6인) 위원장, 감사,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한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 가능
 - *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 주주·채권금융회사·기관투자자 위원
 -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는 3인 전원 출석 및 찬성으로 의결

참고 2. 선임보고 방법 안내

- ① DART 접수시스템(<https://filer.fss.or.kr>)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 및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 로그인
 - * 고유번호 발급 등 관련 문의 : 국번없이 1332(이후 ⑤→①→①)
- ② 화면 상단의 '회사·제출서류' 탭을 선택 후 화면 왼쪽에서 '감사인 선임보고서'를 클릭
- ③ 회사의 상황에 맞게 개황 내용 작성
- ④ 관련 문서 첨부 후 신고서 제출
- ⑤ 제출 후 '접수현황' 탭에서 회사의 문서제출이력 및 세부내용을 확인가능
- ⑥ 수정이 필요한 경우 '재제출'을 통해 업로드